제241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 회 의 (2019.6.24.)

# 규칙안 심사 보고서



의회운영위원회

#### 의안번호 제2019 - 75호

# -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-- 심 사 보 고 서 \_

##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9. 5. 30.

나. 발 의 자 : 박수자, 이홍희, 김향란, 신재화, 이재운, 최정환,

표주숙, 김종두, 심재수, 권재경, 김태경 의원(11명)

다. 회부일자 : 2019. 5. 31.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9. 6. 20.

# 2. 개정이유

- O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·외유성 부실한 국외연수와 연수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
- O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기 위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규칙 제명 변경 :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
- 나. 목적, 적용범위, 허가권자(안 제1조 ~ 안 제3조)
- 다. 심사위원회의 설치, 심사기준, 회의 (안 제4조 ~ 안 제6조)
  - 1) 심사위원 구성
  - 구성: 의원 및 민간위원(민간위원 비율 2/3 이상) 7명 이상
  - 민간위원: 교육계, 법조계, 언론계, 시민사회단체 등

- 심사할 사항: 출장의 필요성, 출장자의 적합성, 출장국과 기관의 타당성, 출장기간의 타당성과 경비의 적정성
- 2) 회 의
-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, 출석위원 2/3 찬성으로 의결 라. 수당 및 여비,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(안 제7조 ~ 안 제9조)
  - 1) 공무국외출장 제한
    -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
    -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계획하는 경우
    -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
    -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
- 마.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 제출 (안 제10조 ~ 안 제11조)
  - 1) 출장계획서 제출: 출국 30일 전까지
  - 2) 출장보고서 제출: 15일 이내 제출, 60일 이내 상임위 또는 본회의 보고
- 바. 예산 편성·집행, 사후관리 등 (안 제12조 ~ 안 제13조)
  - 1) 기 간: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
  - 2) 경 비: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
  - 3) 사후관리: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활용

## 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O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국외연수와 관련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 제기로

- O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
- 규칙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-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- 6. 토론요지 : 없음
- 7. 수정안 요지 : 없음
- 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9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- 10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